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22.1.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 ’22.1.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3.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포함(안 제6조)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으로, “시·도”를 “각각 해당 시·도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권자) ① <u>지방자치단체</u> 의 <u>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u> <u>같다)</u> 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 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3조(임용권자) ① <u>지방자치단체</u> 의 <u>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u> <u>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 ·</u> <u>도의회 의장 및 시 · 군 · 구</u> <u>(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u> <u>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 실시기관) ① 지방별정직공무원 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 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 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험은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u>구청장</u> 의 요구에 따라 <u>시 · 도</u>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 실시기관) ① ----- ----- ----- -----. ----- ----- ----- <u>구청장 및 시 · 군 · 구의회의 의</u> <u>장</u> ----- <u>각각 해</u> <u>당 시 · 도의</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2